

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영상산업지원 사업은 영화의 기획·개발부터 제작까지 지원하는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, 전용관 운영, 시사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영상산업 육성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
- 나. 영상산업 분야 관련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전문성 및 경험과 기술 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다. 현재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'22.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합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: 영상산업지원 사무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영상진흥조례 제4조(영상진흥시책의 수립)
 -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은 영화·영상관련 인력 및 인프라 조성되어 있어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
- 영화의 제작단계 등 기획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독립영화의 제작지원, 촬영지원 등 영화·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기관 필요함
- 또한 해당 사무는 기획개발부터 프로덕션 지원, 상영 및 배급시스템 등 영화·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 요구됨

다. 위탁 대상 사무

- 영화창작공간 시설·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
- 영화창작공간 입주 대상자 모집, 심사 등 입주자 선정·지원
-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
-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
-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
-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
-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및 시사회 개최지원
-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

라. 위탁개요

- 소재지 :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
- 규모 : 전용면적 4,588㎡(1, 2, 5, 7, 8층)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사무형)
- 운영인력 : 7명(팀장 2, 차장 1, 대리 1, 주임 3)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3. 1. 1. ~ 2025.12.31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)

사. 소요예산 : 3,311백만원('23년)

- 인건비 334백만원, 운영비 1,191백만원, 사업비 1,78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2.10.5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영상진흥 조례 제3조, 제10조

제3조(영상진흥시책의 수립)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
2.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
3.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
4.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
5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개최 국내·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
6.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7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8.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'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2. 9. 2.)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지원팀 김문희(☎2133-9221)